

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546호 관련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11월 6일
제 안 자 : 산업건설위원회
(김정호 위원장외 5인)

1. 수정이유

노사화합 및 평화·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상 불필요하고 명확성이 결여된 조문 내용의 일부를 개선 내지 보완하여 노사평화중재 위원회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골자

- 목적·기능에 부합하고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규정을 새로이 정비함(안 제6조제2항)
- 제한적으로 축소된 대상범위의 설정을 확대 적용함(안 제7조제1항)
-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효력을 명확성이 가미된 내용으로 자구를 삽입하여 규정함(안 제8조제1항)

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이천시노사평화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동항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.

안 제7조 제1항 중 “중재를 신청한 당사자”를 “노사당사자”로 한다.

안 제8조 제1항 중 “노동단체·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”를 “노동단체·사용자단체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6조(회의)①(생략) ②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p>1. 장기적인 저희로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때 2. 노사분규가 원만한 합의로 타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. 노사의 중재요청이 있을 때 4.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5. 재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 <p>제7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①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·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②(생략)</p> <p>제8조(의결사항의 효력)①노동단체·사용자단체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전의사항에 대하여 시행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(생략)</p>	<p>제6조(회의)①(제정안과 같음) ②..... <삭제> <삭제> 1..... 2..... 3..... 4.....</p> <p>제7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)①..... 노사당사자..... 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의결사항의 효력)①노동단체·사용자단체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..... ②(제정안과 같음)</p>